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5일, 김정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회의(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전체회의(2026. 4.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정재의원)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안 제37조제3항 신설)

1)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함[1]))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 (이하 생략)

현 행	개 정 안
	<u>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법 제36조[2]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3], 시설물의 면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생략)
<u>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② ~ ⑧ (생략)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산식으로 산정됨.(참고1. 참조)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단위부담금은 2014년부

---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 ④ (생 략)

터 2020년 이후까지 연도별로 시설물의 면적 규모에 따라 350원에서 1,0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4], 교통유발계수는 소매점, 음식점 등 시설물의 종류별 및 도시의 인구 규모별로 구분 적용됨[5].

단위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6]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2배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6년 3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전국 54개 도시 중 39개 도시에서 조례로써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참고3. 참조)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5) 참고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19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각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2014년에 신설된 이후 개정 실적이 없고[7], 별도의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당 기간 경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 연도의 편차가 커, 물가 상승이나 지역별 교통수요 변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지방자치단체 최근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개정 연도 】

구분	시행규칙	시행규칙 기준을 조정한 조례 규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단위부담금 개정 연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6년	2014년	2025년	2026년
교통유발계수 개정 연도	2014년	2023년	2024년	2015년	2012년	2020년	2011년	2021년	2025년	2026년
구분	시행규칙 기준을 조정한 조례 규정									
	부천	수원	광명	제천	청주	천안	전주	여수	포항	창원
단위부담금 개정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20년	2015년
교통유발계수 개정 연도	2015년	2015년	-	2003년	2015년	2022년	2025년	2016년	2020년	2015년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현행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3의 단위부담금에 대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위부담금에 관한 검토를 이행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안 제37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3년마다 검토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기적 검토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행 주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모든 지자체의 시장인지[8],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조례 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시장에 한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의무이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같이 시장의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주기적 검토의무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경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단위부담금에 대한 주기적 검토의무 규정도 상향입법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체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시장이 조례로 조정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대해 3년마다 검토・개선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재검토 대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인지, 조례로 조정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

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자체 중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조례 규정이 없는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에 따른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

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년 이내라도 필요 시 해당 산정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후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단위부담금 재검토 의무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이미 규정 중이므로 조례의 산정기준 재검토도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것이 적정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